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4 - 6호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다둥이 가족의 정의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 촉진 등 출산과 양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가. 다동이 가족의 정의에서 자녀의 수를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수정함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함
- 다.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약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
- 라. 조문 수정에 따른 조 제목을 변경하고, 다동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92
----------	-----

발의연월일 : 2024. 1. 10.

발 의 의 원 : 김상현 · 김경희 · 김묘정 · 김미나 · 김수혜
김영록 · 김우진 · 문순규 · 박강우 · 박선애
백승규 · 서명일 · 심영석 · 오은옥 · 이종화
이천수 · 이해련 · 전홍표 · 진형익 · 최은하
한은정 · 홍용채 · 황점복 의원(23명)

찬 성 의 원 : 김경수 · 김현일 의원(2명)

1. 제안이유

다둥이 가족의 정의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홍보와 포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고용창출 촉진 등 출산과 양육 분위기를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다둥이 가족의 정의에서 자녀의 수를 4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수정함

(안 제2조제1호)

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수정함(안 제2조제2호)

다. 정의한 용어를 다시 약칭하지 않도록 하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약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제5조)

라. 조문 수정에 따른 조 제목을 변경하고, 다동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우선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

마.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련 법령

다. 현행 조례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의”를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경력단절여성”으로 한다.

2. “경력단절여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 제목“(채용 권장)”을“(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을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으로, “권장할 수 있다”를 “권장해야 한다”로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력단절여성”을 각각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이나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 <u>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정의) ----- -----.</p>
<p>1. “다둥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4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p>	<p>1. ----- <u>3명</u> ----- ----- -----.</p>
<p>2. “경력단절여성”이란 「<u>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p>	<p>2. “<u>경력단절여성</u>”이란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u>」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3. “<u>채용지원금</u>”이란 관내 기업이 다둥이 가족의 <u>경력단절여성</u>(이하 “<u>경력단절여성</u>”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p>	<p>3. ----- ----- <u>경력단절여성</u>----- ----- ----- ----- ----- -----.</p>

4.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 권장) <신 설>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 하는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2. (생 략)

3. 경력단절여성 중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4.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다둥이 가족의 경력 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② -----
----- 다둥이 가족의 경력 단절여성--- 권장해야 한다.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 ① -----

-----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

1.·2. (현행과 같음)

3.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

상실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② ~ ④ (생략)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홍보) 시장은 다둥이 가족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둥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이나 출산·양육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관내 기업을 포상할 수 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약칭 : 여성경제활동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창원시 다동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 우선고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동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동이 가족”이란 자녀의 수가 4명 이상인 가족 중에서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말한다.
2. “경력단절여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채용지원금”이란 관내 기업이 다동이 가족의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이라 한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해당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4. “관내 기업”이란 시에 본사, 지사,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등 고용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소속 기관의 노동자 채용 시 경력단절여성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용 권장) 시장은 관내 기업이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경력단절여성을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채용지원금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채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4대 보험에 가입한 관내 기업으로 상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2. 시 관할 구역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 다만, 「창원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내 이전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3. 경력단절여성 중 2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신규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과 임

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경영하는 기업 및 그 사업주의 배우자·사촌 이내의 혈족·인척이 운영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채용지원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채용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이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